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누36634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

원고(재심원고), 항소인

재단법인 A

피고(재심피고), 피항소인

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4구합21608 판결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. 2. 19. 선고 2019재구합174 판결

변 론 종 결 2020. 6. 4.

판 결 선 고 2020. 7. 2.

주 문

1. 원고(재심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,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(재심피고)가 2014. 7. 10. 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5

고(재심원고)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217,720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216,100원, 지방교육세 43,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(재심원고)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